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내부통제기준 제5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마스턴투자운용 정보교류차단 내역을 공개합니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2.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3.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4.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6. 부동산(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운용 관련 정보 중 당사 고유재산이 투자되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로서, 고유재산 운용에 필요한 정보. 이 경우 해당 집합투자재산 운용 정보교류차단 부문과 고유재산 운용 정보교류차단 부문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
7. 집합투자‧투자일임‧신탁재산의 구성내역‧운용 관련 정보 중 1개월이 지난 정보
8.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회사에서 지정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9.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10.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11. 고유재산 운용: 경영부문 내 고유재산 운용 담당 부서
12. 헤지펀드 운용: 헤지펀드 운용 담당 부서
13. 리츠 운용: 리츠 부문
14. 블라인드펀드 운용: F&F 부문
15. GIC 펀드 운용: 개발투자1본부
16. 그 외 운용: 위 제2호 내지 제5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
17. 기타 회사에서 정보교류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18.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19.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리츠투자재산, 기타 투자기구(PFV 및 SPC포함)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20.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21.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현황에 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22.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23. 거래주의 목록 및 지정기준

: 미공개중요정보로 분류될 수 있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입수한 경우, 해당정보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임직원 이외의 자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 발행인과 관련한 판매, 거래, 조사분석자료의 제공, 사적 거래 가능

1. 공개되지 않은 딜 또는 거래에 회사가 관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주요정보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회사가 M&A나 IPO 포함 기업금융업무를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경우

1.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금융거래 관련 자문을 하기로 한 경우

: M&A, 기업금융거래 등이 고객 또는 잠재고객이 동 거래와 관련하여 이를 진행시킬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경우

1. 회사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거나 기업금융자문계약을 체결을 한 경우
2. 거래제한 목록 및 지정기준

: 미공개중요정보로 분류될 수 있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입수한 경우 해당 운용부서 및 정보를 입수한 유관부서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거래제한

1. 특정발행인과 관련하여 널리 일반에 알려진 거래에 회사가 투자자문, 매매·중개, 인수인, 공동주간사 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2. 기타 법상·계약상 또는 사회통념상 회사가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경우
* 사례) 상장리츠 또는 상장증권을 운용하는 운용 부문 임직원의 아래 지정된 목록 거래 금지를 원칙으로 함
* 당사가 운용하는 상장리츠
* 당사가 영향을 미치거나 미공개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상장증권
1.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2.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3. 당사 또는 당사의 집합투자기구가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거래의 양쪽 당사자 모두에 관여하여 거래하는 경우
4. 당사 또는 당사의 집합투자기구가 당사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와 거래하는 경우
5. 어떠한 거래로 인하여 당사의 투자기구와 그 거래 상대방 모두로부터 당사가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6. 당사 집합투자기구의 피투자자 또는 차주와 당사가 거래하는 경우
7. 기타 당사의 집합투자기구와 당사 간, 당사의 집합투자기구 간, 당사의 특정 집합투자기구 수익자 간에 이해관계가 다른 거래
8. 대응방안
9. 담당 부서는 거래를 실행하기 전 정보교류차단 대상 책임자 및 준법감시인에게 통지하여 이해상충의 위험성 및 해당 거래의 실행 여부를 논의
10. 거래를 실행하는 경우, 해당 투자기구의 수익자에게 거래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그 외 교류방법은 제8조를 준용
11.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12. 임직원의 업무를 수행에 있어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13.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의 거래에 대해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곤란할 경우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매매 그 밖의 거래 불가
14. 이해상충 발생 우려종목, 회사명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지정하고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 및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제한 및 관리
15.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식별기준을 마련하여 설정하고, 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 및 담당조직을 설치·운영
16. 상시정보교류 허용 임원 지정 및 정보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함
17. 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대상 부문과 비대상 부문 간의 업무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
18.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접근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사전승인을 받아 최소한의 범위로 제공하는 등의 예외적교류원칙을 정의하고 후선업무목적의 예외적 교류 허용
19. 계열회사 등 제3자와의 정보교류 및 이해상충 유형별로 지정하여 구분·관리
20. 정보보교류차단의 기록 유지 및 정기적 점검, 임직원 교육 및 정보교류차단 내역공개 등